

CEO Report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2016. 1

김석영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개요	1
1. 제정 목적	1
2. 주요 내용	2
II. 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4
부 록 I	6
1. 규제·감독 현황	6
2. 현행 규정체계	8
3. 운영규정 취지 및 체계	10
부 록 II	13



I. 개요¹⁾

1. 제정 목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상시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
 - 기존의 행정지도 운영규칙,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제도시행에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정
- 동 규정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퇴색되고 **그림자 규제 등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 감독행정은 무효임.

1)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 운영규정 원문 참조.

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집행 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다음과 같은 7개 합리화 기준 검토를 의무화함.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 | | |
|---------------------------|-------------|
| ❶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 ❷ 선진사례 벤치마킹 |
| ❸ 오프라인→온라인 | ❹ 포지티브→네거티브 |
| ❺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 촉진 | |
| ❻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 정비 | |
| ❼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

②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²⁾으로 구분하여 원칙, 방식 및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협회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과 같은 자율규제 제·개정에 대한 개입 금지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행정지도 내용 반영 요구 금지
- 금리·수수료 등 보험회사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배당, 그리고 보험 회사의 인사에 개입 금지
 -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
- 금융행정지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불가

2) 금융규제는 법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금융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요청하는 행위이며, 감독행정작용은 법령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행위임. 자세한 정의는 〈부록〉 참조.

③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명시적 금융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및 합리화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함.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현장점검반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하여 보험회사 방문을 통해 금융규제 집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³⁾**을 설치·운영함.
-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훈령 준수 여부 및 보험회사의 금융규제 운영실태를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함.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키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상벌제도를 운영함.

-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취함.

3) 규제관련 고충민원을 당해업무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자문)하는 자 또는 이를 위한 제도.

Ⅱ. 규제 제정 의미와 시사점

■ 사문화되었던 행정지도 운영규칙 등을 부활시키고 이의 엄격한 준수를 위한 장치를 설정함.

- 운영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옴부즈만 제도(외부감시), 금융현장지원단(내부감시), 외부평가 및 상벌제도·교육(내부통제)으로 다층의 조치를 취함.
- 그림자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음.

- (예시 1) 가격 및 상품에 대해서 그림자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 운영규정 제7조 ⑥항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 금지 위배
 - 보험회사는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현장점검반에 통보
 - 외부기관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
 - 해당 공무원 인사조치
- (예시 2) 모범기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 운영규정 제③항 단체에 대한 개입 금지 위배

■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ombudsman 등 여러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

■ 그러나 **보험상품에 대한 개입금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모호한 소비자 보호 기준으로 가격, 배당 및 인사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리·수수료 등 보험회사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배당, 그리고 보험회사의 인사에 개입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 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보험상품 가격과 함께 상품 형태에도 그림자 규제가 존재하여 왔음.

■ 보험회사들은 자율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금융당국의 **운영규정 취지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

- 금융회사는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 | |
|------------------------------------|--|
| ❶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 | ❺ 관련 법령 |
| ❷ 내용 및 목적 | ❻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 |
| ❸ 유효기간 | ❼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 배당, 금리,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 |
| ❹ 담당자 정보(금융위: 과장급 이상, 금감원: 국장급 이상) | |

※ 감독행정 공문은 “❸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

부 록 I



1. 규제·감독 현황⁴⁾

- 금융감독원이 '15년 상반기(1. 1~6. 15) 중 금융회사, 민원인, 금융위원회, 법원 등에 외부에 발송한 공문은 총 35,120건임.
 - (부서별) 공시·조사·회계·보험조사 관련 부서 11,823건, 소비자보호처·서민금융지원 부서 11,452건, 감독부서 7,331건, 검사부서 3,668건 순
 - (유형별) 감독·검사·조사 관련 자료요청 및 결과통보 19,238건, 민원·정보 공개 회신 11,706건, 금융위 등 유관기관 송부 3,310건, 기타 서무 관련 648건 順
 - '15. 7. 1 현재 금감원이 등록한 행정지도는 총 45건
- 금감원의 공문 중 민원회신 및 감독·검사상 자료제출·결과통보가 대부분임 (88.1%).
 - 금융회사에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이 대부분임.

4) 금융감독원 자료 참조.

■ 그러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규행위 해소 촉구, 법규안내, 단순 협조요청 등
금감원의 모든 공문을 행정지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

- 금융회사 입장에서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행정지도 등을 규제로 인식
(소위 그림자 규제)

■ '14년 7월, 금융당국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지도 개선을 추진함.

- 공식 등록 행정지도 외 행정지도는 무효임을 수차 공표

■ 그러나 금융현장에서는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지 않았음.

- 금융권 종사자·전문가 대상 외부 설문기관 서베이('15. 7. 2)에서 약
78%가 비공식 행정지도가 존재한다고 대답함.

■ 비공식 행정지도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

- 행정지도 등 미준수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 우려
- 과거 금리, 수수료 등 시장영역에 대한 관여
-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내부교육 또는 제도화 미흡
- 감독행위를 보완하는 모범기준 등을 금융회사는 사전에 개입하는 행정
지도로 체감



2. 현행 규정체계

가. 행정지도 운영규칙

-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지도의 원칙,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지도의 정의, 원칙, 방식,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록 및 공개, 존속기간 및 사후관리, 재검토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 행정지도는 관련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함 (제3조 ①항).
 -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행정지도 시 그 취지·내용·존속기간·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등을 알려야 하며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제3조 ①항).
- 규정 미준수 시의 조치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 유사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등을 심의함(제4조 ①항).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을 뿐 행정규제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규정임.

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
 -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타 위탁기관
-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문서 등에 의한 정책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도 선진화, 금융규제 정비 상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 금융감독기관은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조 ①항).

-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선언적 역할에 그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부를 규제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키기 곤란

3. 운영규정 취지 및 체계

가. 제정 취지 및 경과

-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타 금융
기관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할 목적
 -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
 -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임.
- 이를 위하여 현행 금융규제·감독 관련 규정을 재정비
 -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전체가 반영되어 제정 시
폐지
 - 자체규제심사위 규정 및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
규정은 존치 계획
 - 타 정부부처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존치 결정

나. 훈령 체계⁵⁾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5개 장(章), 24개 조문으로 구성

● 총칙

-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등을 정의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행정지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독행정작용]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

5) 금융위 보도자료(2016. 1. 8) 참조.

- 명시적 규제
 - 금융규제 신설·강화 시 반드시 사전검토해야 하는 원칙 제시
 - 명시적 규제의 원칙과 절차는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수 권고사항으로 규정
- 행정지도/감독행정
 -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내용적·절차적 요건 제시
- 상시개선체계
 - 이 훈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

부 록 Ⅱ

국무총리훈령 제661호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으로 한정한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 가. 금융감독원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 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 타. 금융위원회나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 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1) 금융행정지도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감독행정작용

나. 금융회사 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 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의 통보

마.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행위 외의 행위로서 이와 비슷한 것

5.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법

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제4조(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① 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2. 금융회사 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그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 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 서로 다른 금융회사 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 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 금융회사 등의 자산·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 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5조(의견청취)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민간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 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 ④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 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 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 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융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

2.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 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원칙의 내용
7. 제7조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 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 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 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4.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제11조(금융감독원의 내부보고절차) 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원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부원장보 바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이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2.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3. 제10조 각 호의 사항
4.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부원장보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이후 지체없이 보고

2.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행정지도 또는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의 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 금융행정지도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90일
2.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6개월
3.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 2년

4. 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1년

③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금융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1회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제15조(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하는 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 그 밖의 금융규제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업무처리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③ 금융회사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 접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신고 접수기관과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금융회사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에게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현장지원단(이하 “금융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은 매년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금융현장점검반)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현장점검반(이하 이 조에서 “금융현장점검반”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 또는 금융현장지원단에게 금융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현장점검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현장의 금융규제 집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애로사항의 접수·처리 업무

2. 제1호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

제20조(실태평가)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상벌)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훈령을 잘 지켜서 금융규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신설·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금융행정지도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저자약력

■ 김 석 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정책실)
(E-mail : skim@kiri.or.kr)

CEO Report 2016-0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발 행 일	2016년 1월
발 행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
(☎3775-902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